

February 03, 2016

국세청의 역외탈세 관련 세무조사 실시와 역외 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

국세청은 2016. 1. 27. 미신고 역외소득·재산을 올해 3월말까지 반드시 자진신고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위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역외소득·재산 은닉 혐의자에 대한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1월 중 역외탈세 혐의자 30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고, 이번 세무조사 대상의 주요 탈루 유형은 ① 사주일가가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과 편법거래를 통해 자금을 유출, 해외에 은닉한 자금을 사주일가가 유용한 유형, ②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서류상 회사에 가공비용 등을 송금하거나, 서류상 회사를 거쳐서 수출하도록 하여 법인자금을 유출, 은닉한 유형, ③ 해외 서류상 회사를 설립, 외국인 기관 투자자로 위장하여 국내투자 후 투자소득을 국외로 유출한 유형 및 ④ 해외에서 수취한 소득을 신고 누락한 후 임직원 명의 등을 이용, 국내에 변칙 반입한 유형 등입니다.

또한 위 보도자료는 위와 같은 역외탈세의 혐의가 있는 경우 과세당국이 금융거래 추적조사, 포렌식 조사, 국가 간 정보교환, 거래처 조사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며, 고의적인 세금 포탈 사실이 확인될 경우 추징 및 형사고발 등 엄정 조치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이 뉴스레터를 통해 알려드린 것처럼, 올해부터는 미국과의 금융정보자동교환(FATCA)을 시작으로 하여, 내년부터는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CRS)에 따라 세계 79개국 이상의 국가와 각각 금융정보를 교환하게 됩니다(상세한 내용은 저희 법인의 2015. 12. 24.자 뉴스레터 등 참조 => [2015. 12. 24.자 뉴스레터 확인하기](#)). 이와 같은 국가 간 공조를 통한 정보교환이 활성화됨에 따라 과세당국이 미신고 역외소득 및 재산을 파악하기가 용이해지는데, 미리 자진하여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조사 등 당국의 제재조치를 받게 될 위험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미신고 역외소득 및 재산에 대한 자진신고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가산세와 과태료를 면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조세포탈, 재산국외도피,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관련 범죄에 대해서도 최대한 형사 관용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상세한 내용은 저희 법인의 2015. 12. 1.자 뉴스레터 참조 => [2015. 12. 1.자 뉴스레터 확인하기](#)). 자진신고제도는 2015. 10. 1.부터 6개월간 운영되는 한시적인 제도로서, 만료일은 2016. 3. 31.입니다.

이번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는 미국과의 금융정보자동교환 및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등에 따라 밝혀지게 될 수많은 역외탈세에 대하여 대대적인 제재 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정부가 한시적으로 제공하는 기회이며,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대상에는 해당 계좌에서 이루어진 입·출금액이 포함되어 있어 사실상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관한 정보(임

대료 소득, 부동산 매각 대금 등)까지 파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일회적·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이번 자진신고제도는 역외자산을 적법하게 양성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성진 파트너변호사	TEL. 02 316 4405	E-Mail. sjinchoi@shinkim.com
● 김현진 파트너변호사	TEL. 02 316 4246	E-Mail. hjikim@shinkim.com
● 정태성 파트너변호사	TEL. 02 316 4228	E-Mail. tsjeong@shinkim.com
● 이종원 변호사	TEL. 02 316 1791	E-Mail. jwonlee@shinkim.com
● 정인화 선임공인회계사	TEL. 02 316 4219	E-Mail. ihchung@shinkim.com

Chambers Asia-Pacific Awards 2014
South Korea Law Firm of the Year : Shin & Kim



SHIN&KIM
법무법인 세종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s regular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http://www.shinkim.com>